

입탕세

환영합니다.천천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유후 시내에서는 미네랄 목욕탕에서 입욕하는 사람에게 “입욕세”를 부과합니다.
'입욕세'는 국법(지방세법 제701조) 및 유후시 납세 조례에 규정된 미네랄 목욕탕에서 입욕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세입니다.

'시설의 운영은 고객으로부터받은 입욕세를 유후시에 지불하며,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 협력 부탁드립니다.



세액

1. 숙박의 경우 ①숙박요금 4,000엔 이하(소비세 제외)
1박당 1인 100엔

②숙박요금 4,001엔 이상(소비세 제외)
1박당 1인 250엔

(2024년 10월 숙박분부터)

※숙박자는 입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세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2. 당일치기 입욕 ①이용 요금 400엔 이상(소비세 제외)
1인70엔

※12세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입탕세는 다음과 같은 사업의 일부에 사용됩니다.

(지방세법 제701조)

- 환경위생시설의 정비
- 광천원의 보호 및 관리 시설의 정비
- 관광의 진흥(관광 시설의 정비 포함)
- 소방시설,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